



원종욱

연세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의 교수

## 특별한 상황의 산재

우리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 점심시간에 잠깐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도중 넘어졌거나, 퇴근하다가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고 집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의 사고가 산재로 적용될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어떤 경우가 업무상 재해와 관련되는지 알아보자.

### 휴게, 점심시간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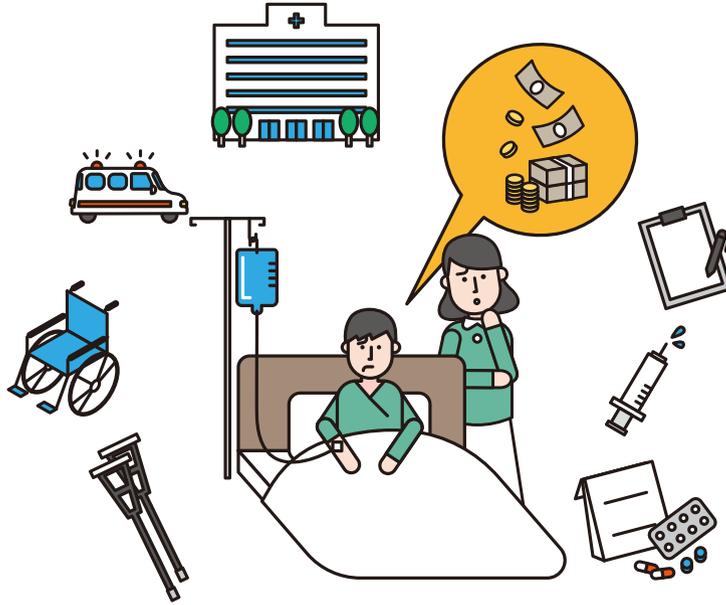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sup>1)</sup> 점심시간도 당연히 휴게시간에 포함된다. 물론 노동시간 도중 생리적 필요에 따라 화장실

에 간다거나 물을 마시는 등의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속한다. 그러면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최초의 「산재보험법」에는 휴게시간 내 사고 관련한 별도의 조항이 없었다. 처음으로 「산재보험법」에 휴게시간이 언급된 것은 1995년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볼 수 있다.<sup>2)</sup> 다만 이때는 작업시간 외 사고에 규정된 것으로 천재지변이나 돌발적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사업장이나 사업장 인근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았다. 즉 이때까지는 휴게시간 중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개인적 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1)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제54조(휴게)

2) 「산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1995. 5. 1.] [노동부령 제97호] 제35조 (작업시간 외 사고)



당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점심시간 중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원들끼리 친선 축구를 하다가 다쳤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휴게시간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여도 그 행위가 업무 준비 혹은 정리행위, 사회 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취업규칙, 기타 관행에 따른 행위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sup>3)</sup>

휴게시간중 사고에 대한 최초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2000년 개정 시행된 시행규칙에 있다.<sup>4)</sup> 이 조항은 휴게시간 중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 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소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 통념상 할 수 있는 행위'와 '사업장 내에서'의

행위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주 목인(승인) 아래 점심시간에 동료들끼리 관행적으로 축구를 하였다면 이는 사회 통념상 휴식 시간에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축구하다가 다치면 업무상 재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점심시간에 사업주의 허락 아래 사업장 인근 자택에서 식사한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sup>5)</sup> 이 판례에서 시행규칙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규정에 불과하며,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 과정이 업무의 준비행위나 생리적 행위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했다. 대법원은 시행규칙과 달리 조금 더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8년 전면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

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 제35조의2 (휴게시간 중 사고)

5)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상 재해의 범위에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였고, 이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sup>6)</sup>

### 출퇴근 재해의 의미, 어떤 경우가 산재일까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기본 원칙을 처음 규정한 것은 1995년이며, 이때 처음 출퇴근 재해에 관해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가 노동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였다.<sup>7)</sup>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출퇴근 차량을 제공한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에 해당하기에 출퇴근 차량이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있었다. 더욱이 공무원연금<sup>8)</sup>에서는 2000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시작하여 대다수 중소기업 노동자가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출퇴근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의 OECD 국가에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었고, 출퇴근 재해를 대기업과 공무원들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회적 압력과 요구에 따라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었다.<sup>9)</sup> 출근이나 퇴근 중에 간단한 개인적 용무를 보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업무상 재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산재보험법」에서는 ‘일상생활

에 필요한 행위’를 위해서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하거나 중단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즉 출퇴근하던 중 장을 보거나 학교에 가거나 아이를 보육 시설에 맡기거나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간병을 위해 요양기관에 가는 일 등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이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일을 출퇴근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마트나 병원, 보육기관에 가는 경로뿐 아니라 출퇴근 상황이 중단되었어도, 해당 장소에 가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일을 마치고 다시 귀가하는 때까지를 출퇴근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퇴근 후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장을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694호]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1995. 5. 1.] [노동부령 제97호] 제35조(작업시간 외 사고) ④ [개정 1999. 10. 31.]

8)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시행 2000. 1. 31.] [행정자치부령 제89호] 제14조(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4933호] 제37조(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3. 출퇴근재해. 나.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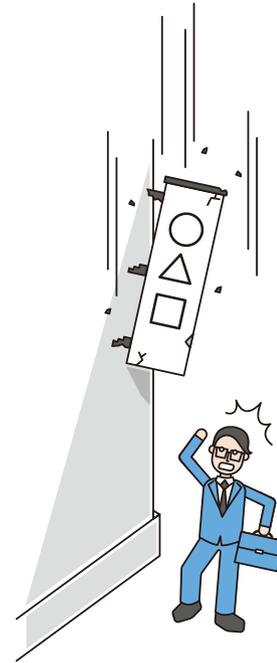
10)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 제2023-3호. 2023.06.30

보기 위해 마트에 가거나,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로 가는 중에 사고가 났다면 이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마트나 학교, 병원 등 출퇴근 중 일상생활 행위를 하기 위해 머무르는 곳에서 사고가 났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을 마치고 다시 귀가하는 길은 다시 출퇴근에 해당하기에 마트나 학교 등에서 귀가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과 일상생활 행위의 판단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에서 언급한 사례 몇 가지를 들어 구체적인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sup>10)</sup> 첫째, 출퇴근이란 주거지부터 취업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지는 보통 집을 말하는데, 본인 집이 아니라도 통근으로 인해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는 등 숙소를 정한 경우 또는 폭설이나 천재지변으로 귀가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경우를 주거지로 볼 수 있으며,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병원에서 밤새고 출근해도 출퇴근으로 본다. 그러나 친구 집에서 영화를 본 다음 날 그곳에서 직접 출근한다면 이는 출퇴근 재해의 출근으로 보지 않는다.

둘째, 주거지의 경계는 어디인가. 주거지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어느 곳이 주거지인가? 아파트처럼 다수가 사는 공동주택은 공동 현관문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을 나누는 문, 즉 본인 집의 문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 출근을 서두르다 집 안의 현관에서 넘어져 다치면 산재가 되지 못한다. 반면에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쳤다면 공동 현관문을 통과하기 전이라도 이미 자기 집 현관을 떠났기 때문에 산재가 된다.



셋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어느 선까지 인정될까. 통근 경로에 편의점이 있지만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경로에서 벗어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은 인정될 수 있지만, 퇴근길에 있는 백화점에 들러 명품 가방을 구입 후 귀가하던 중이라면 출퇴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처럼 식사, 이·미용, 목욕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상행위라면 이는 출퇴근 재해로 보고 있다. 즉 회사에 식당이 없어 퇴근 중 식사하거나 업무로 몸이 더러워졌지만, 회사에 샤워장이 없어 퇴근 중 목욕하는 것 등은 일상생활 행위로 볼 수 있다. 교육을 위해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로 인해 기술 학원이나 영어 학원에 가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취미 활동인 피아노나 스포츠 댄스를 배우는 것은 포함되지 못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출퇴근 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출퇴근하는 것인지,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을 일으키는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